

August 29, 2014

도급인 귀책사유로 계약해지도 지체상금 적용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34043, 34050 판결 -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을까?

1. 사실 관계

X는 Y건설사와 사이에, X가 Y에게 철근과 레미콘 등의 자재비를 선지급한다는 약정이 포함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던 중 도급인 X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재비 선지급을 중단했고, 이에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해진 수급인 Y는 X의 약정 위반을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했다. 그런데 Y가 위 도급계약을 해제할 무렵에 Y는 이미 자신의 귀책사유로 30일 정도 공사를 지체하고 있었고, X는 이를 고려해 Y사에 도급계약상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을 주장했다. X의 주장은 타당한가.

2. 해설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약정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해 놓은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약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411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처럼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지체상금 약정이 적용되는 것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가 일반적이다. 수급인의 시공지체가 해제사유가 되면서 동시에 지체상금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도급인의 기성대금 미지급 등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공사도급계약의 종료에 책임이 있는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공사를 지체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가 문제 된다.

이 사건은 도급인은 선금금 미지급, 수급인은 시공이행지체를 함으로써 양자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지체상금약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됐다.

대법원은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약정 준공일보다 늦게 공사를 완료하거나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뿐 아니라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고 판시하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지체상금 약정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551조는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의 양립을 인정하고 있는 바, 지체상금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해제와 별개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 문제는 이러한 경우 지체일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있는바, 이 판결은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했다라면 완성할 수 있었을 때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해 당초의 준공예정일로 부터 지체된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지체일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상대방에게 지체상금 약정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 이 글은 2014. 8. 20자 건설경제신문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윤 변호사

TEL. 02 316 4205

E-Mail. jyyun@shinkim.com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